

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2가단1042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1. 6.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장민하

별지1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동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내지 4층 각 557.34㎡, 5층 내지 18층 각 547.26㎡, 지하 515.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동구 대 762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6866000분의 321553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의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은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 이며, 피고는 사해행위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의 [D] 주식회사는 2016. 7. 14. 위 [C]에게 금 700만원을 계약만료일 2019. 9. 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 (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E]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63670호), 원고승소판결이 2020. 9. 15. 선고되어 2020. 10. 6.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10,951,205 원 및 그 중 금 5,142,312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소외 주식회사 F는 2016. 7. 14. 위 C에게 금 5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9. 7. 14.,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대출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F는 2018. 4. 27.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39627호), 원고승소판결이 2019. 9. 6.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10,267,768,660,000원 및 그 중 금 4,919,800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소외 주식회사 G는 2016. 10. 19. 위 C에게 금 300만원을

만기일자 2021. 10. 19.,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9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G는 2017. 12. 26.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22458호), 2018. 6. 12.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1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6,343,184원 및 그 중 금 2,979,428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12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내지 (3)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인 27,561,781원입니다(10,951,205원 + 10,267,76866000원 + 6,343,184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외 H인데, 위 H는 2021. 1. 1. 사망하였고, 위 C는 위 H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H의 상속인들 및 위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축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6. 25.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1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

다* 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C의 상속 지분에 대한 위 C
과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
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위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
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
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

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H은 2021. 1. 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B, 피고, 수익자와 자녀들인 C(채무자), I, K가 있었습니다(갑 제14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은 모녀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위 H은 2021. 1. 1.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1. 6. 25.'입니다(갑 제16호증의1 내지 4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서 참조).

따라서 위 2021. 6.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소외 C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16호증 1 내지 4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서 참조).

